

의안번호	제701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2025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

제 출 자	충청북도지사
제출연월일	2024년 10월 2일

2025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

의안
번호

701

제출연월일 : 2024년 10월 2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202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2. 기관별 출연 개요

연번	대상기관	출연목적 및 필요성	출연금액 (단위:천원)	관계법령 (출연근거)
1	충북 연구원	- 지역 현안에 대한 조사·분석 및 대안 제시 등 충북발전 정책 연구를 위해 설립된 충북 연구원의 운영비 지원 필요	4,823,000	▶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2항 ▶ 「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제2항
2	한국 지방행정 연구원	- 지방 행정·재정 발전 등에 필요한 연구·조사를 위해 국·자치체가 공동 설립·운영하는 한국지방행정 연구원의 운영비 지원 필요	250,000	▶ 「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」 제3조제3항
3	지방 공기업 평가원	- 지방공기업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과 기관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경영컨설팅 등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 지원 필요	60,000	▶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8조의4제3항
4	한국 지방세 연구원	-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, 조사, 교육 등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하여 설립·운영하는 한국지방세 연구원의 운영지원 필요	188,675	▶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

3. 주요내용

① 충북연구원 운영 출연금 지원 : 4,823백만원

-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「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지역 현안에 대한 조사·분석, 대안 제시 등 충북발전 정책연구를 위해 설립·운영되는 (재)충북연구원의 운영비 지원

②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지원 : 250백만원

- 「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」에 따라 지방 행정·재정·세제 발전 등에 필요한 연구·조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및 전국 시도가 출연하여 설립·운영하는 (재)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운영비 지원
※ 17개 시·도 공동 출연사업

③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지원: 60백만원

-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8조의4제3항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정책연구, 경영지도, 경영자문 및 경영평가업무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·운영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운영비 지원
※ 17개 시·도 공동 출연

④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: 189백만원

-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, 조사, 교육 등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·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 ※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사업임

4. 관계법령 발췌 등 : 붙임

붙임 1

1] 충북연구원

< 출연 계획 >

사 업 명	충북연구원 운영	출자·출연금	4,823,000천원		
출자·출연 기 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 관 명 : (재)충북연구원 ○ 대 표 : 황인성 ○ 일반현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 재 지 :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-1 - 인 력 : 정원 46명(현원 40명) - 주요사업 : 도정발전 중장기계획 수립 및 주요정책에 대한 조사·연구 등 				
사 업 내 용					
사업개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기간 : 2025. 1. ~ 12. ○ 사업내용 : 인건비 및 운영비 ○ 출연금액 : 4,823백만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구원 운영 : 4,473백만원 - 특별연구조직(공공투자분석센터): 350백만원 				
출자·출연 필 요 성	○ 지역 현안에 대한 조사·분석 및 구체적인 대안 제시 등 정책연구 수행을 통해 충북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충북연구원 출연 필요				
근거법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2항 ○ 「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제2항 				
검토의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충북연구원은 충북발전을 위한 지역현안 조사·분석, 대안 제시 등 정책 연구를 위해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기능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○ 보조사업 전입금 수입 등 자체세입 감소와 인건비(공무원 보수인상률) 및 자산취득비(내구연한 도래 장비 교체 등) 등 세출 증가로 '24년 대비 2억5천만원 증액한 출연금 지원이 필요함 				

주관부서	정책기획관	소속부서장	팀 장	담당주무관	전화
		정선미	황병두	이상옥	220-2135

< 출연기관 현황 >

설립근거	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「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				전화번호 : 043-220-1147 홈페이지 : www.cri.re.kr			
주요연혁	- 1990.05.15. 충북경제연구소 개소 - 1994.12.27. 충북개발연구원 명칭변경 - 2011.03.24. 충북발전연구원 명칭변경 - 2016.04.20. 충북연구원 명칭변경			기관형태 (출자,출연)	출연기관			
인원현황 (’24.9월 현원기준)	계		정규직		비정규직			
	98		40		58			
임원 (’24.9월 기준)	직책(직책명)	성명	소속(직위)		임기			
	이사장	김00	충청북도지사		재임기간			
	이사(당연직)	정00	충청북도 행정부지사		재임기간			
	”	이00	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		재임기간			
	”	김00	충청북도 경제통상국장		재임기간			
	”	이0	충청북도 균형건설국장		재임기간			
	”	우00	신한은행 충북지역본부장		재임기간			
	”	황00	충북연구원장		22.10.01. ~ 25.09.30			
	이사(선임직)	한00	미래도시연구원 이사장		23.11.01 ~ 26.10.31			
	”	유00	미래농어촌개발연구원 대표		23.11.01 ~ 26.10.31			
	”	윤00	충청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		23.11.01 ~ 26.10.31			
	”	남00	한국교원대학교 교수		23.11.01 ~ 26.10.31			
	”	이00	(사)충북경제포럼 회장		23.11.01 ~ 26.10.31			
	”	허00	한국교통대학교 교수		23.11.01 ~ 26.10.31			
	”	안00	청풍로펌 변호사		23.11.01 ~ 26.10.31			
	”	김00	청주대학교 교수		23.11.01 ~ 26.10.31			
	감사(당연직)	정00	충청북도 정책기획관		재임기간			
	감사(선임직)	김00	공인회계사		23.11.01 ~ 26.10.31			
주요기능	- 도정 전반의 중장기계획 수립 등 지역개발정책 수립 -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방행정발전에 대한 조사연구 - 국내·외 각 연구기관과의 교류 협력 및 각종 정보·자료의 수집 및 제공							
자본금(기금) (단위:백만원)		2,171			지방공기업발전기금 (단위:백만원)	-		
최근3년간 예산 현황 (단위: 백만원)	연도		2022	2023	2024	재무현황 (백만원) ’23.12.31기준	자산	10,796
	일반 회계	예산액	6,107	5,861	5,888		부채	832
		지자체 지원액	4,729	4,390	4,456		자본	9,963
2023년 경영성과 (단위:백만원)		총수익			총비용		당기순이익	
		14,908			16,117		-1,209	

관계법령 발췌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13조(운영재원)

-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.
 1.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
 2. 제14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
 3. 그 밖의 수입금
-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.
- ③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□ 「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제6조(운영경비)

- ① 연구원의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 1. 기금운용의 과실수입
 2. 용역수탁 등 연구사업의 수익금
 3. 출판물 판매 대금
 4. 그 밖의 수입
- ② 도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② 한국지방행정연구원

< 출연 계획 >

사 업 명	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원	출자·출연금	250,000천원
출자·출연 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관명 : (재)한국지방행정연구원 ○ 대표 : 공석 ○ 일반현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재지 :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21 - 인력 : 정원 104명(현원 94명) - 주요사업 : 지방 행정·재정·세제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개발, 조사·연구 등 		
사 업 내 용			
사업개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기간 : 2025. 1. ~ 12. ○ 사업내용 :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지원 ○ 출연금액 : 250백만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전국 17개 시·도 공동 출연 : 각 250백만원(세종시 150백만원) 		
출자·출연 필요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설립·운영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을 통해 지방분권 확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, 연구활동 수행 		
근거·법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」 제3조3항 		
검토의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정안전부와 시도가 공동 설립한 연구기관으로, 각 시도는 연구원 운영비, 인건비, 기금에 총당하기 위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음 ※ 17개 시·도 공동 출연 ○ 자치분권 확대 정책개발,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자치단체와 중앙정부 협력 방안 마련 등의 역할 수행을 고려할 때,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지원은 지속적으로 필요함 ○ 광역 시·도 지방분권 정책지원 등 미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전국 시도의 공동 출연금 지원이 필요함 		

주관부서	정책기획관	소속부서장	팀 장	담당주무관	전화
		정선미	황병두	신혜정	220-2136

< 출연기관 현황 >

설립근거	「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」				전화번호 : 033-769-9916			
					홈페이지 : www.krila.re.kr			
주요연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984. 9 지방행정연구소 개소 - 1986. 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개칭 - 1986. 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정 - 2014. 11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설치 - 2016. 12 청사 이전(서울 서초동 → 강원 원주혁신도시) 			기관형태 (출자,출연)	출연기관			
인원현황 (’24.9월 현원기준)	계		정규직		비정규직			
	105		94		11			
임원 (’24.9월 기준)	직책(직책명)	성명	소속(직위)			임기		
	이사장	공석				’23.12.16.일자 임기 만료		
	이사(당연직)	21명	행안부(4) :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, 자치분권국장, 지방재정국장, 균형발전지원국장 광역 사도(17) : 기획관리(조정)실장			재임기간		
	이사(임의직)	김00	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			’24. 3. 4. ~ ’26. 3. 3.		
	”	김00	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			’24. 3. 4. ~ ’26. 3. 3.		
	”	손00	청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			’24. 3. 4. ~ ’26. 3. 3.		
	”	이00	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			’24. 3. 4. ~ ’26. 3. 3.		
	주요기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방행정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자료의 조사·연구 - 지방투자사업 타당성조사 평가 및 연구 - 지방행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·연구 등 						
자본금 (단위:백만원)		59,900 (직전연도말 기준)			지방공기업발전기금 (단위:백만원)		-	
최근3년간 예산 현황 (단위: 백만원)	연도	2022	2023	2024	재무현황 (백만원) ’23.12.31기준	자산	69,781	
		일반 회계	예산액	13,631		13,352	13,196	부채
	지자체 지원액		4,100	4,150		4,150	자본	59,900
2023년 경영성과 (단위:백만원)	총수익				총비용		당기순이익	
	22,249				19,579		2,670	

관계법령 발췌

□ 「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」

제3조(출연금)

- ① 연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, 그 밖의 수입금에 의하여 운영한다.
- ② 국가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.
- 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.
-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,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지방공기업평가원

< 출연 계획 >

사 업 명	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	출자·출연금	60,000천원		
출자·출연 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 관 명 : 지방공기업평가원 ○ 대 표 : 목영만 ○ 일반현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 재 지 :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12-6(서초동) - 인 력 : 76명(이사장, 상임이사, 연구직 37, 일반직 23, 무계약 7, 파견공무원 5, 비정규직 2) - 주요사업 : 지방공기업 경영지도, 자문, 사업타당성, 정책연구·교육 등 				
사 업 내 용					
사업개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기간 : 2025. 1. ~ 12. ○ 사업내용 :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경영컨설팅, 정책연구과제 수행 등 ○ 출연금액 : 60백만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도별 재정력지수(50%) 및 평가대상 공기업수(50%) 고려 전국 시도별 배분 * 17개 시도 출연금액 : 1,002백만원 				
출자·출연 필요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·운영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을 통해 지방공기업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과 기관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경영컨설팅 등 각종 지원사업 추진 				
근거법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8조의4제3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 				
검토의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적 연구기관으로서, 각 시도는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을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76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음 ○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지방공기업 정책연구·컨설팅·사업타당성 검토 등 지방공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연구수행을 강화하고 기관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출연금 지원이 필요함 ○ 특히,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계획·예산·결산 등은 행정안전부 및 자치단체 이사 5명(시도별 순번제 위촉)이 포함된 이사회(12명)에서 심의·의결하고 있어,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감독이 가능함 				
주관부서	예산담당관	소속부서장	팀 장	담당주무관	전화
		이승열	손정미	김송은	220-2242

< 출연기관 현황 >

설립 근거	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				전화번호 : 02-3489-2700				
					홈페이지:www.erc.re.kr				
주요 연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992. 3. 재단법인 지방자치경영협회 설립 - 1994. 8.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전환 - 2000. 1. 재)한국자치경영협회로 명칭 변경 - 2002. 9. 한국자치경영평가원 명칭 변경 - 2011. 4. 경영지도법인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 명칭 변경 - 2016. 6.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 명칭변경 및 법정기관화 			기관형태 (출자,출연)	지방자치단체 공동 출연기관				
인원현황 (24.9월 현원기준)	계		정규직		비정규직				
	76명		74명 (무기계약 7명 / 파견공무원 5명)		2명				
임원 (24.9월 기준)	직책(직책명)	성명	주요경력 (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)		임기 (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)				
	이사장	목OO	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		'23. 5.30. ~ '26. 5.29.				
	상임이사	김OO	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		'23. 6. 5. ~ '26. 6. 4.				
	당연직이사 (비상임)	5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행안부(1) : 지역경제지원관 - 광역시·도(4) : 기획관리(조정)실장 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당해직위 재임기간 - 광역시도 윤번제 (2년임기) ('23. 1. 1. ~ '24. 12.31.) 				
	위촉직이사 (비상임)	채OO	서경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초빙교수		'24. 2.29. ~ '27. 2.28.				
		임OO	한길회계법인 부대표		'22.11.24. ~ '25.11.23.				
		이OO	세종사이버대학교 아동학과 교수		'24. 2.29. ~ '27. 2.28.				
		함OO	대구대학교 경찰학부 교수		'24. 2.29. ~ '27. 2.28.				
감사(비상임)	정OO	삼정회계법인 부회장		'24. 2.29. ~ '27. 2.28.					
주요기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방공기업 정책 연구개발, 공기업의 설립 및 투자타당성 검토 - 지방공기업 경영진단 및 경영컨설팅 - 지방공기업 임직원 교육훈련 등 								
자본금 (단위:백만원)		300			지방공기업발전기금 (단위:백만원)		11,927		
최근3년간 예산 현황 (단위: 백만원)	연도	2022		2023		2024			
		일반 회계	예산액	18,074	17,849	19,795	재무현황 (백만원) '23.12.31기준	자산	21,425
			지자체 지원액	1,008	1,008	1,002		부채	1,666
						자본		19,759	
2023년 경영성과 (단위:백만원)	총수익				총비용		당기순이익		
	14,195				13,647		548		

관계법령 발췌

□ 「지방공기업법」

제78조의4(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·운영)

- ①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, 관련 정책의 연구,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(이하 "평가원"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- ② 평가원은 법인으로 하며,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-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. 이 경우 출연의 지급,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④ 평가원에 이사회와 감사 1명을 둔다.
- ⑤ 이사회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.
- ⑥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한다.
- ⑦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- ⑧ 이사 및 감사의 임기, 선임 방법 등 그 밖에 평가원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-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원을 지도·감독하며,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다.
- ⑩ 평가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4 한국지방세연구원

< 출연 계획 >

사업명	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	출자·출연금	188,675천원
출자·출연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관명 : 한국지방세연구원 ○ 대표 : 강성조 ○ 일반현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재지 :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길 16 - 인력 : 95명(현원 70, 파견공무원·행정원 등 25) - 주요사업 : 지방세제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		
사업내용			
사업개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기간 : 2025. 1. ~ 12. ※ 전국 243개 자치단체 공동사업 ○ 사업내용 : 지방세제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○ 출연금액 : 188,675천원('24년대비 6,513천원 감) * 산출기초 :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(1,572,295,728천원)의 1만분의 1.2 		
출자·출연필요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방세제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및 세제 개편,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·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·출연하고자 함 		
근거·법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방세기본법 제151조(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·운영) ○ 지방세기본법 제152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영) ○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) 		
검토의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, 정기 간행물 발간,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, ○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운영, 쟁송사무 지원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무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, ○ 특히,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(총12명)에서 심의·의결하고 있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지방세 업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해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 		

주관부서	세정담당관	소속부서장	팀장	담당주무관	전화
		이정노	김윤미	윤유진	220-2755

< 출연기관 현황 >

설립근거	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1조(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·운영)			전화번호 : 02-2071-2789			
				홈페이지 : www.kilf.re.kr			
주요연혁	- 2011.2 설립등기, 2011.4 개원		기관형태	출연기관			
인원현황 (2024년 9월 현원기준)	○ 정원 88명 / 현원 70명 * 육아휴직 7명 포함						
	구분	계	원장	관리직	연구직	전문직	
	정원	88명	1명	3명	56명	5명	
	현원	70명	1명	3명	39명	4명	
총인원	95명	정원의외 인원 25명 (과건공무원12, 위촉연구·전문원8, 행정원등5)					
* 연구직(40명) : 연구위원직 20명, 연구원직 12명, 조사분석직 8명							
임원 (2024년 9월 기준)	직책 (직책명)	성명	주요경력		비고		
	이사장	정OO	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		2024.2.2.~2027.2.1.		
	부이사장	박OO	전라남도 신안군수		2024.2.28.~2025.2.27.		
	원장	강OO	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		당연직		
	이사	김OO	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		당연직		
	이사	황OO	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		2024.8.30.~2025.8.29.		
	이사	김OO	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		2024.8.30.~2025.8.29.		
	이사	정OO	경기도 자치행정국장		2024.8.30.~2025.8.29.		
	이사	신OO	충청남도 자치안전실장		2024.8.30.~2025.8.29.		
	이사	류OO	대구광역시 중구청장		2024.2.28.~2025.2.27.		
	이사	서OO	울산광역시 남구청장		2024.2.28.~2025.2.27.		
	이사	이OO	경상북도 고령군수		2024.2.28.~2025.2.27.		
	이사	박OO	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		2023.8.30.~2025.8.29.		
	감사	이OO	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		당연직		
	감사	김OO	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		2024.2.28.~2026.2.27.		
주요기능	-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						
설립자본금 (단위:백만원)	1 (직전연도말 기준)			출자·출연액 (단위:백만원)	127,411 (‘11~’24년 까지 지자체가 출자·출연한 금액)		
최근3년간 예산 현황 (단위:백만원)	연도	2021	2022	2023	재무현황 (백만원) ‘23.12.31기준	자산	25,335
	예산액	12,805	18,069	17,689		부채	1,587
	지자체 지원액	10,422	13,797	12,383		자본	23,748
경영성과 (단위:백만원) ‘23.12.31기준	총수익			총비용		당기순이익	
	17,064			15,850		1,593	

관계법령 발췌

□ 「지방세기본법」

제151조(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·운영)

- 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·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(이하 “지방세연구원”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-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, 감사 2명을 둔다.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,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·선출하되, 이사장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.
-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,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.
- ④ 지방세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(이하 이 조에서 “경영공시”라 한다)하여야 한다.
 1.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, 예산 및 운영계획
 2. 전년도 결산서
 3. 전년도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
 4. 전년도 인건비 예산 및 집행 현황
 5. 경영실적의 평가결과
 6. 외부기관의 감사결과, 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
 7. 기본재산 및 채무 변동 등 재무 현황
 8.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⑤ 경영공시의 시기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⑥ 지방세연구원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,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「민법」 제32조와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(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)을 준용한다.
-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입과 관련한 연구·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수 있다.

제152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용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·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·운용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(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,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)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, 용도,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
□ 「지방세기본법」 시행령

제94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)

-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"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. <개정 2019. 12. 31., 2020. 9. 8.>

1. 1만분의 1.2

2. 1만분의 0.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

-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.

1.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

2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,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·평가

3. 지방세의 연구·홍보

4.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

5.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

-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.

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.